

의안번호	2205297
의 퇴 인	윤영석의원
회 답 일	2024.1.8
추 계 번호	24B484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골재품질향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 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83억 3,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916억 8,100만원(연평균 183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골재의 품질기준 (안 제22조의4제8항)	104	104	104	104	104	520	104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안 제34조의4제2항 신설)	18,232	18,232	18,232	18,232	18,232	91,161	18,232
추가재정소요	18,336	18,336	18,336	18,336	18,336	91,681	18,336
국비	6,099	6,099	6,099	6,099	6,099	30,495	6,099
지방비	12,237	12,237	12,237	12,237	12,237	61,185	12,237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골재의 품질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품질검사 실시 및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제8항 신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34조의4제2항 신설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천법」 제37조¹⁾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²⁾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제2항 신설) 1.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 개선, 어업보호 및 복리증진 등 지원사업 3. 기타 골재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의무규정

1)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폐(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6.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골재의 품질기준)	×	• (제3호) 품질검사 실시에 따른 정부 지원 규모, 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추계)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의 사업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34조의4제2항 신설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	• (추계)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2조의4제8항)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품질향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함
- (안 제34조의4제2항)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지출사업 증가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재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하천점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세외수입 감소분이 지출 사업에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분을 추계함
 - 세외수입 감소분 최근 5년간 실적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추계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골재의 품질기준(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 골재 품질검사 품질관련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계함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골재품질향상 관련 유사사례 연구용역 평균 사업비는 1억 400만원 수준으로, 추계기간 동안 연간 1건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골재품질향상 관련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예

NO	과제명	소요금액(백만원)
1	콘크리트용 골재 토분 제거 공정기술 개발	80
2	선별과쇄골재 품질 성능 등급화 및 품질 성능 등급 기준 제·개정	100
3	콘크리트용 골재의 토석(원재료)에 대한 품질기준 연구	100
4	혼합골재 자원화 및 활성화 연구	140
5	석회암 골재 활성화 연구	100
평균		10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나.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안 제34조의4제2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재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의 지출 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 세외수입 감소분 최근 5년간 실적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추계하며, 환경부가 집계가능한 하천점용료 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계함
- 최근 5년간 하천점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남

[표 3] 하천점용료 수입 실적: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국가 하천 점용료 수입	5,062	18,494	4,645	4,853	29,573	12,525
지방 하천 점용료 수입	10,807	15,562	9,384	10,427	10,013	11,239
합계	15,869	34,056	14,029	15,280	39,586	23,764

주: 본 자료는 「하천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선박 등의 운항, 하천산출물 채취, 토석·사력의 채취,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합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표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 실적: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국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수입 (새만금개발청 및 지방청)	10,182	14,882	31,278	15,014	15,893	17,450
지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수입 (시·도)	93,065	40,164	19,368	73,994	23,143	49,947
합계	103,247	55,046	50,646	89,008	39,036	67,397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하천점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은 최근 5년간 실적치 평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재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82억 3,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911억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하천점용료 수입 감소분 :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하천점용료수입(A)		23,764	23,764	23,764	23,764	23,764	118,820
	국가하천(a)	12,525	12,525	12,525	12,525	12,525	62,625
	지방하천(b)	11,239	11,239	11,239	11,239	11,239	56,195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수입(B)		67,397	67,397	67,397	67,397	67,397	336,985
	국가(c)	17,450	17,450	17,450	17,450	17,450	87,250
	지방(d)	49,947	49,947	49,947	49,947	49,947	249,735
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 등 수입 합계(C=A+B)		91,161	91,161	91,161	91,161	91,161	455,805
	국가수입합계 (D=a+c)	29,975	29,975	29,975	29,975	29,975	399,610
	지방수입합계 (E=b+d)	61,186	61,186	61,186	61,186	61,186	56,195
개정안에 따른 세 외수입 감소분 (C×0.2)		18,232	18,232	18,232	18,232	18,232	91,161
	국가하천 (A=D×0.2)	5,995	5,995	5,995	5,995	5,995	29,975
	지방하천 (B=E×0.2)	12,237	12,237	12,237	12,237	12,237	61,186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골재품질향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 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83억 3,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916억 8,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골재품질 연구 (국비, A)	104	104	104	104	104	520
하천점용료의 100분의 20 규모의 지출증기분 (B=a+b)	18,232	18,232	18,232	18,232	18,232	91,161
국비(a)	5,995	5,995	5,995	5,995	5,995	29,975
지방비(b)	12,237	12,237	12,237	12,237	12,237	61,186
추가재정소요 (A+B)	18,336	18,336	18,336	18,336	18,336	91,681
국비 (A+a)	6,099	6,099	6,099	6,099	6,099	30,495
지방비 (b)	12,237	12,237	12,237	12,237	12,237	61,185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참고자료 1] 골재 품질검사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골재는 건설공사용적의 70 ~ 80%를 차지하는 주요 기초재료로, 불량골재의 유통은 건설공사 전체의 품질저하 및 안전을 위협
- 3기 신도시, 주택공급확대 등 골재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나, 천연골재 고갈,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불량골재 유통 가능성 증가
- 이에,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품질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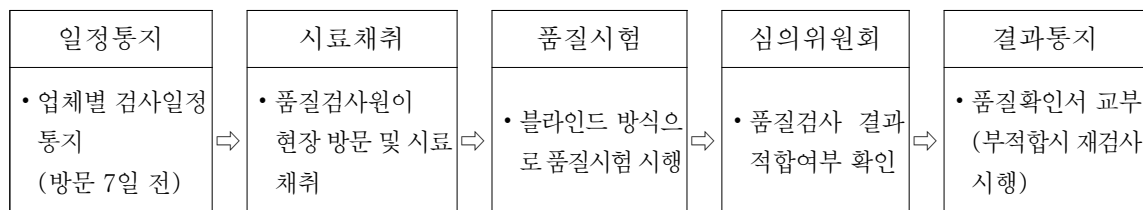
□ 추진경과

- 품질검사제도 도입 발표('21.3, '21.6)* 및 골재채취법령 제·개정('22.6)**
 - *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21.3),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6.24)
 - ** 골재채취법 개정('21.12), 시행규칙 개정('22.6), 업무처리지침 제정('22.6)
- 공모를 거쳐 품질관리전문기관 선정(7.11, 한국골재산업연구원)
- 권역별 설명회 개최(4회, 7.28~8.3), 보도자료 배포(5차례) 등 제도 홍보

□ 주요내용

- (기존)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
- (개선)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

□ 품질검사 주요절차



[참고자료 2] 골재 품질검사 수수료

(자료: 한국골재산업연구원)

1. 1품목 품질검사 수수료

항 목		1품목 기본 수수료 (원, VAT 별도)	비 고
인건비		483,402	품질검사원, 품질연구원
출장비		129,999	현장 시료채취 관련
기타경비		130,194	샘플용기, 탁송비, 검사차량비, 기타 행정처리비 등
소계		743,595	
시험비 (선택)	①콘크리트용 골재	275,550	
	②아스콘용 골재	307,450	
	③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골재	149,500	
총계		①1,019,000	백원단위 절사
		②1,051,000	
		③ 893,000	

2. 2품목 이상 품질검사 수수료

항 목		1품목 기본 수수료 (원, VAT 별도)	비 고
기타경비		40,000	샘플용기, 탁송비
시험비 (선택)	①콘크리트용 골재	275,550	
	②아스콘용 골재	307,450	
	③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골재	149,500	
총계		①315,000	백원단위 절사
		②347,000	
		③189,000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